개정번호	개 정 내 용	개정일자	비 고
0	초판 제정	2025-01-01	제 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주)하림(이하 "회사")이 협력사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ESG경영 체계를 확립하고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대상 및 범위) 이 규정은 회사의 가치사슬 내에 있는 모든 활동과 관련하여 회사에 제품 및 용역을 제공하거나 기타 거래를 위해 계약을 체결한 모든 1차 협력사와 그 하도급 협력사에 적용한다.

제3조 (기본원칙)

① 회사는 국내외 법규와 UNGC(UN Global Compact),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K-ESG 가이드라인, 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 OECD 실사 가이드라인(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등 국내외 Initiatives에 기반하여 공급망 관리 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급망 관리 정책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협력사 행동규범
2. 협력사 ESG 리스크 관리
3. 협력사 ESG 지원
4. 원부자재 수급 안정성 관리
5. 원재료 공급망 추적성 관리
6. 협력사 고충 처리 제도 운영

③ 회사는 공급망 관리 정책 수립 및 이행을 위한 전담 조직을 두고, 정책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해야 한다.

④ 회사는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 체결, 공정한 협력업체 선정 및 운영, 바람직한 서면 발급 및 보존, 불공정 거래 사전 예방 등 '공정 거래 4대 원칙'을 기반으로 공정하고 건전한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⑤ 회사는 '협력사 행동규범'에 동의한 협력사와 거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최고경영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 예외를 둘 수 있다.

제4조 (책임과 권한)

① 공급망 관리 전담 부서는 제3조 1항의 공급망 관리 정책에 대해 최고경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여부를 공식적인 수단을 통해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② 회사는 협력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사와 소통하고 상생경영 및 동반성장, ESG 역량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공급망 내 모든 협력사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소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가지며 경영의사결정 및 사업 운영과정에 있어 ESG 경영을 고려해야 한다.

④ 회사는 당해 규정과 협력사 행동규범에 따라 협력사의 리스크에 대해 평가 및 실사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협력사에 확인된 리스크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⑤ 협력사는 개선사항에 대한 협의에 따라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제2장 협력사 ESG 행동규범

제5조 (행동규범의 정의) '협력사 행동규범'은 협력사가 사회책임경영을 위해 준수해야할 특정 원칙을 말한다.

제6조 (행동규범의 작성 및 구성)

① 회사는 ILO 국제노동기준,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UN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UNGPs) 등 글로벌 표준 및 프레임워크에 기반하여 '협력사 행동규범'을 제정한다.

② 행동규범은 국내외 법규와 글로벌 표준 및 프레임워크에 따라 환경, 안전보건, 인권경영, 윤리경영 등 핵심영역을 포함해 구성해야 한다.

제7조 (행동규범의 운영)

① 공급망 관리 전담 부서는 '협력사 행동 규범'을 모든 실무부서와 협력사에 공개해야 한다.

② 협력사 계약 담당부서는 행동규범에 대해 최초 계약 체결 시와 갱신 시에 모든 협력사의 동의를 받아 계약서와 함께 보관해야 한다. 다만, 최초 거래 이후 최소 1년의 기간 동안 거래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단발성 계약 협력사에 대해서는 최고경영자의 승인을 받아 행동규범 서약을 제외할 수 있다.

③ 계약서 검토 부서는 협력사의 계약서 검토 시 '협력사 행동 규범 준수 서약서'의 첨부 및 협력사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서약서가 미비 된 계약서에 대해 보완하도록 계약 담당부서에 요청해야 한다.

④ 공급망 관리 전담부서와 협력사 계약 담당부서는 상시 협력사의 행동규범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8조 (행동규범 위반 시 제재)

① 회사는 행동규범을 준수하지 않는 협력사에게 시정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협력사는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회사의 시정 등의 조치 요구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③ 1항의 시정 등의 조치 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행동규범을 준수하지 않는 협력사는 최고경영자의 승인을 받아 거래물량을 축소하거나 거래 관계를 중단 또는 종료할 수 있다.

제3장 협력사 ESG 리스크 관리

제9조 (협력사 ESG 리스크 관리의 목적) 회사는 협력사의 ESG 관련 리스크를 식별하고 협력사에 잠재된 리스크가 회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협력사 ESG 리스크 관리 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 (협력사 ESG 리스크 관리 대상)

① 회사는 모든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ESG 리스크를 관리하여야 한다. 단, 자원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대상이 되는 협력사를 선정해 관리할 수 있다.

② ESG 리스크를 관리할 핵심 협력사를 선정할 경우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 중 1가지 이상의 기준을 적용하여 선정한다.

1. 핵심 원부자재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지 여부
2. 대체불가능한 원부자재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지 여부
3. 구매 또는 거래금액
4. 거래기간
5. 회사에 대한 의존도

③ 회사는 국내 ESG 평가기관의 평가등급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일부 협력사를 ESG 리스크 관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1조 (신규 협력사 ESG 평가)

①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모든 신규 협력사에 대해 ESG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신규 협력사 중 핵심 협력사를 선정하여 ESG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신규 협력사와 계약 전에 ESG 리스크에 대한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협력사 ESG 리스크를 진단 및 평가, 실사, 개선하는 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한다.

③ 회사는 상시적인 서면 또는 온라인 설문조사 등을 통해 신규 협력사의 ESG 리스크를 진단하고 진단 결과 고위험으로 평가된 협력사에 대해서는 ESG 현장실사를 수행한다.

④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진단 또는 실사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력사와 협의하여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동의한 협력사에 대해 계약을 진행한다. 다만, 이에 동의하지 않는 협력사에 대해서는 계약을 거부할 수 있다.

⑤ 회사는 제5항의 개선계획에 대해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협력사가 개선계획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협력사는 최고경영자의 승인을 받아 거래 관계를 중단 또는 종료할 수 있다.

제12조 (협력사 ESG 정기평가)

① 회사는 거래 관계에 있는 협력사의 ESG 리스크에 대한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진단 및 평가, 실사, 개선하는 ESG 리스크 정기평가 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한다.

②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핵심 협력사를 선정하여 연 1회 ESG 정기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선정된 핵심 협력사에 대해 서면 또는 온라인 설문조사 등을 통해 협력사의 ESG 리스크를 진단하고 진단 결과 고위험으로 평가된 협력사에 대해서는 ESG 현장실사를 수행한다

④ 회사는 ESG 진단 또는 현장실사 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력사와 협의하여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⑤ 회사는 협력사가 개선계획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협력사는 최고경영자의 승인을 받아 거래 관계를 중단 또는 종료할 수 있다.

제13조 (협력사 자가평가 및 책임)

① 협력사는 ESG 리스크에 대한 자가평가 기준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자가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해야 한다.

② 협력사는 회사가 요청하는 경우 제1항의 자가평가 결과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③ 협력사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회사가 요구하는 개선 및 완화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제4장 협력사 ESG 지원

제14조 (협력사 ESG 지원 계획 수립 및 공식적 선언)

① 회사는 협력사의 ESG경영을 구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원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고 최고경영자의 승인을 받아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② 협력사 ESG 지원 계획에는 전략적 방향과 전략적 방향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추진과제 및 ESG 지원으로 인한 협력사의 성과를 측정하고 지원 계획의 효과를 점검할 수 있는 핵심성과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15조 (협력사 ESG 지원 예산 및 인력) 회사는 협력사의 ESG 지원에 관한 핵심성과지표를 달성하기 위해 예산 및 투입 인력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16조 (협력사 ESG 지원 활동 및 프로그램)

① 회사는 협력사 ESG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를 수립하여 운영해야 한다.

② 회사는 협력사의 ESG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ESG 관련 교육 및 컨설팅 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해야 한다.

③ 회사는 협력사 ESG 지원 활동 및 프로그램의 수혜 업체 수, 지원 금액, 교육 시간 등 운영실적을 기록관리하고 이를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제17조 (협력사 ESG 협약)

① 회사는 동반성장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ESG 지원을 위한 협약 내용을 포함하거나 별도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ESG 협약에는 회사가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조성하기 위해 ESG 성과 개선 및 역량 강화 등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자원 지원 등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교육 지원: ESG 관련 품질관리, 안전보건, 외국어 교육, 직무 및 정보화 역량 강화 교육 등
2. 기술 지원: ESG 관련 특허개방, 공동 기술개발, 기술자료 임치 지원 및 기술보호 등
3. 금융 지원: ESG 관련 성과개선 인센티브 지급, 상생펀드 운영,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현황 등
4. 인허가 지원: ESG 관련 각종 대내외 인증서 취득, 검증의견서 발행에 필요한 제반업무 등
5. 설비 및 장치 지원: 친환경 또는 스마트 설비 신규 설치, 산업용 장치 구조적 개선 등

제5장 공급망 추적 가능성

제18조 (추적 가능성의 정의 및 개요)

① 추적 가능성은 원자재와 최종 제품의 출처, 원산지 또는 생산 상황을 추적하는 능력을 말한다.

② 회사는 제품의 원산지와 공급망의 공급자를 식별하여 부적합한 제품의 거래를 종료 또는 현지화 하거나 관련된 기타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식별하고 방지하기 위해 추적 가능성을 관리해야 한다.

③ 회사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추적 가능성을 관리할 원부자재를 선정하여 관리한다.

제19조 (공급망 추적 가능성 관리)

① 회사는 ISO 22095(Chain of custody – General terminology and models) 등 국제 표준에 따라 공급망 추적 가능성 관리 정책을 수립해 운영해야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정책에 따라 각 조달 제품별로 국가, 지역 수준이나 농장, 부화장, 사료공장 등 어떤 특정 수준까지 추적 가능한지 주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③ 회사는 ISO 22095 등 국제적으로 공인된 표준에 따라 추적 가능한 원부자

재의 공급량을 별도로 관리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된 표준에 따라 추적하지 못 하는 공급량을 축소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④ 회사는 공급망을 통해 제품의 경로를 추적하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표준의 인증을 받거나 인증을 취득할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6장 공급망 안정성

제20조 (원부자재 수급 차질 리스크 관리)

① 1차 협력사와 2차 이하의 협력사 또는 원산지에서 원부자재를 수급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의 리스크를 식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수급 차질 리스크를 관리할 원부자재를 선정해 관리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제1항에서 식별한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특정 지역 및 국가의 원부재료 수급 비율을 분석하여 원부자재 수급 차질 리스크를 관리할 기준을 설정하고 원부재료 공급선 다변화 전략 수립 및 대체 가능한 공급사를 발굴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제1항에서 식별한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특정 물류•유통망에 대한 의존도를 분석하여 원부자재 수급 차질 리스크를 관리할 기준을 설정하고 물류•유통망 다변화 전략을 수립 및 대체가능한 물류•유통망을 발굴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공급망 불안정성 발생에 대비하여 수급 차질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수준의 재고 확보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장 협력사 고충 처리 제도

제21조 (협력사 고충 처리 제도의 개요)

① 회사는 공정한 거래관계 확립 및 ESG 경영 제고를 위해 공급망 내 모든

이해관계자가 접근할 수 있는 고충 처리 제도를 운영하고 이에 대해 협력사 및 이해관계자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② 협력사 및 공급망 내 이해관계자는 불만사항이나 개선제안, 분쟁 조정 등을 포함하여 윤리, 환경, 노동, 인권, 안전 및 보건 등 ESG 관련 법규와 당해 규정에 따라 개인의 권리 및 이익이 침해당하거나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제보할 수 있다.

제22조 (협력사 고충 처리 제도의 운영)

① 회사는 고충 처리 제도를 상시 운영하고 공급망 내 협력 관계에 있는 협력사 및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② 회사는 공익신고자 보호 및 보상 제도에 따라 제보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비밀과 신변을 보장하고 제보를 이유로 제보자에게 불합리한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

③ 회사는 제보 받은 내용의 사실관계에 대해 철저히 확인하고 조치사항에 대해 고충 처리 채널 등을 통해 제보자에게 피드백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